

제27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

강서푸드뱅크·마켓 1호점 재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1. 4. 20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미 래 · 복 지 위 원 회

강서푸드뱅크·마켓 1호점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2021년 4월 20일
전문위원 서 선 옥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1 - 30
- 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1년 4월 6일
- 라. 회부일자: 2021년 4월 6일

2. 제안이유

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슈퍼마켓 형태의 식품 나눔공간인 강서푸드뱅크·마켓(1호점)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해당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부칙 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○ 시설개요

시설명	소재지	시설규모	면적(m ²)
강서푸드뱅크·마켓 1호점	공항대로2가길 5	지상3층 지하1층	608.85

○ 위탁사무내용

- 강서 푸드뱅크·마켓 1호점 운영 및 관리 일체
- 강서 푸드뱅크·마켓 1호점에 속한 시설물, 장비, 물품, 비품 등 일체 관리
- 강서 푸드뱅크·마켓 1호점 직원 임용, 활용, 관리
- 기타 위 각 1호의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무 일체

※ 올해 6월 등촌3동에 완공예정인 2호점과 병합하여 위탁 예정

○ 위탁기간: 5년(2021. 8. 22. ~ 2026. 8. 21.)

○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

○ 소요예산: 연간 187,257천원(시비 43%, 구비 57%)

나. 추진일정

- 2021년 5월: 위탁 공모 및 위탁업체 선정(1,2호점 병합위탁)
- 2021년 6월: 협약체결
- 2021년 8월: 위탁운영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7조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, 제10조, 부칙 제3조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강서푸드뱅크·마켓 1호점의 위탁기간이 올해8월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,
- 강서푸드뱅크·마켓 1호점은 기부받은 음식 및 생활용품을 강서구의 어려운 주민들에게 배분하기 위해 2008년 설치되어 현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(※ 강서푸드뱅크·마켓 연혁 참조), 올해 8월 2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등촌3동에 신설되는 강서푸드뱅크·마켓 2호점과 병합하여 공개모집으로 위탁체를 선정하려는 것임
- 검토결과, 강서푸드뱅크마켓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및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등의 기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,
- 다만, 기부식품의 체계적인 관리 및 기부금품 모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공정하고 신중한 위탁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참고

강서푸드뱅크·마켓 연혁

- 1998.01. 푸드뱅크 시범사업 실시(서울, 부산, 대구, 과천)
- 2001.04. 샐인힐(구 자매복지관) 강서기초푸드뱅크 개소
- 2003.01. 푸드마켓 시범사업 실시(서울푸드마켓/도봉구 창동역사내)
- 2003.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강서기초푸드뱅크 승계 및 위탁 운영 실시
- 2008.08.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강서사랑나눔 푸드마켓 위탁 운영 계약 체결(2013.07.31.까지)
- 2008.10. 강서사랑나눔 푸드마켓 개소 (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2가길 5)
- 2008.11. 강서사랑나눔 푸드마켓 업무 개시(500명 회원 등록 카드 발급)
- 2013.07. 강서기초푸드뱅크, 강서사랑나눔 푸드마켓 통합 실시
- 2013.08.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강서사랑나눔 푸드마켓 재위탁 운영 계약 체결(2016.08.21.까지)
- 2015.11. 강서푸드뱅크·마켓 시설명 변경
- 2015.12. 강서푸드뱅크·마켓 우수시설 선정
- 2016.08.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강서푸드뱅크·마켓 재위탁 운영 계약 체결(2021.08.21.까지)
- 2017.09. 거점형 이동푸드마켓 실시 (곰달래문화복지센터, 가양도서관)
- 2018.03. 어르신일자리지원사업(실버뱅크나눔단) 연계 배달서비스 실시
- 2018.11. 통합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임시장소 이전
(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, 1층)
- 2020.09. 통합복지센터 건축 완료에 따른 이전
(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2가길 5, 지층 및 1,2층)

□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- 제7조(국가 등의 지원)**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·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③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□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-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**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
-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**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

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-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위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
 - 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- 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- 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
-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

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무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.

제10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·기구·장비·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
2.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, 공신력
3.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
4.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
5.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

부칙 제3조(승인 및 동의 절차의 특례)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치 사무의 경우 제7조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